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62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조인철 · 박용갑 · 박희승  
주철현 · 정준호 · 박수현  
서삼석 · 안도걸 · 정진욱  
민형배 · 어기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 · 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이어 시스템 장애로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CDN ·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CDN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6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② ~ ⑤ (생 략)

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  
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타인  
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  
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  
는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